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74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이언주 · 박범계 · 윤준병
김한규 · 안호영 · 오세희
김우영 · 안도걸 · 조계원
장철민 · 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음.

직무발명 제도의 핵심 가치는 발명과 기술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그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있음. 이는 단순한 이익배분의 문제를 넘어 연구자의 창의와 도전을 존중하고,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에 다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혁신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 원칙임.

그러나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기술에 관한 권리가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되어 있으면 별도의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 설정·

허락 절차를 거쳐야 함. 이 과정에서 권리의 승계·관리와 특허출원 등의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산학협력단 등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이 연구자 창업 여부와 실시권·기술료 조건을 사실상 좌우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연하여 사업화의 적기를 놓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발명을 한 연구자와 그 권리를 승계·관리하는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및 전담조직의 권한과 보상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누가 어떠한 실질적 기여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정하여야 하며, 연구비·시설·장비·인력의 제공, 권리화 비용의 부담 및 전문적인 사업화 지원 등 각각의 구체적인 기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특히 통상적인 권리관리 또는 행정지원만을 이유로 연구자의 창업을 제한하거나 창업기업에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부과해서는 아니 됨.

이에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연구자 창업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제 창업·제품화·매출·고용·후속투자 등 사업화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전담조직의 부당한 개입·지연·거절을 금지하려는 것임. 또한 자신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과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등의 실질적 기여에 상응하는 공정한 계약조건과 보상체계를 확립하며, 기술료의 감면·유예·분할납부·성과연동 및 지분 방식, 처리기한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재검토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연구자 중심의 기술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지식재산
처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자 창업기업의 선
정, 기여도 평가, 실시권·기술료, 처리기한·이의절차 등에 관한
공동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 나. 정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평가할 때 실제 창업·제품화·매출·고용·후속투자
등의 성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3항).
- 다. 공공연구기관의 창업지원 내부규정에 공공기술의 이전·이용, 기
여도 평가, 기술료, 신청 처리기한 및 재검토 절차를 포함하도록 함
(안 제25조의3제5항 및 제6항).
- 라. 공공연구기관과 산학협력단 등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이 권리
의 승계·관리 또는 통상적인 출원·등록 등 행정지원을 이유로 연
구자의 창업을 제한하거나 기술이전 및 실시권 설정·허락을 부당
하게 지연·거절하고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5조의3제7항 신설).
- 마.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전용실시권
을 설정하도록 하되, 전용실시권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실시
권을 우선 허락하도록 함(안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바. 실시권과 기술료 조건을 정할 때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의 실질적 기여를 고려하고, 전담조직의 통상적인 행정지원은 실제 비용과 전문적 기여의 범위에서만 반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5제8항 신설).
- 사. 창업 초기 기술료를 감면·유예·분할납부 또는 성과연동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채권·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제9항 신설).
- 아. 불허결정에 대한 재검토는 최초 결정에 관여한 사람을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함(안 제25조의5제11항 및 제12항 신설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마련할 수 있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식재산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동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연구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1. 연구자등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공개된 기준과 절차
2. 공공기술의 개발·관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연구자등, 공공연구기관 및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실질적 기여도 평가기준
3. 연구자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의 설정·허락 및 기술료 산정에 관한 기준
4. 연구자 창업기업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사유의 통지 및 재검

토 절차

5. 연구자등의 창업과 관련한 이해충돌의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자등의 창업과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 및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성과를 평가할 때 특허출원 건수나 기술료 수입뿐만 아니라 연구자 창업, 제품·서비스의 출시, 매출, 고용, 민간 후속투자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실제 사업화 성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분야별 특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제5항 중 “연구자등의”를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기준에 따라 연구자등의”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를 “제정·운영하고 이를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 등 제5항에 포함되어야 하는”을 “사용, 공공기술의 이전·이용, 실질적 기여도 평가, 실시권 및 기술료의 조건, 신청의 처리기한과 재검토 절차 등 제5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 승계·관리 또는 통상적인 출원·등록·유지 등 행정지원을 이유로 연구자등의 창업을 제한하거나, 창

업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을 부당하게 지연·거절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에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연구자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실시권 설정 등의 특례) ① 공공연구기관은 제24조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이 해당 공공기술에 관한 전용 실시권의 설정을 신청한 경우 그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이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창업자 중 1명 이상이 해당 공공기술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자등일 것. 해당 공공기술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을 한 연구자등을 포함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공공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공공기술에 관한 공동 발명자 또는 그 밖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협약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다만, 공공연구기관은 결정을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전용실시권의 설정이 공공기술의 보호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공공연구기관은 둘 이상의 창업기업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자등의 기여도, 사업계획, 사업화 역량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이나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협약에 위반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창업기업에 통상실시권을 우선적으로 허락하여야 한다.

⑥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공공기술을 사업화하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의 범위·기간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창업기업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의견을 들은 후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공공연구기관은 실시권의 범위·기간, 기술료 및 그 밖의 계약조건을 정할 때 해당 공공기술의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기여와 공공연구기관이 부담한 연구비·시설·장비·인력, 권리의 출원·등록·유지비용 및 전문적인 사업화 지원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이 수행한 통상적인 권리관리 또는 행정지원은 실제로 부담한 비용과 제공한 전문적 지원의 범위에서만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창업기업에 과도한 기술료나 그 밖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실시권을 설정·허락하는 경우 창업 초기의 현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술료를 감면·유예·분할납부 또는 사업화 성과에 연동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24조제5항에 따른 주식·채권·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술의 특성, 창업기업의 재무상태와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⑩ 공공연구기관은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허락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창업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연구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⑫ 공공연구기관은 제11항에 따른 재검토를 위하여 외부의 기술·법률·사업화 전문가와 연구자 대표가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재검토위원의 과반수는 공공연구기관 및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최초 결정에 관여한 사람은 재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⑬ 공공연구기관은 제1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따른 우선협상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의 설정·허락, 기술료, 재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자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실시권 설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허락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기준 마련에 관한 준비행위)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의 공동기준을 이 법 시행일 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정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 를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u>마련할 수 있</u> <u>다.</u> <u><신 설></u>	제25조의2(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① ----- ----- ----- ----- <u>마련하여야 한</u> <u>다.</u> ②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u> <u>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u> <u>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과학</u> <u>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식재산</u> <u>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u> <u>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u> <u>사항에 관한 공동기준을 마련</u> <u>하고 공공연구기관에 보급하여</u> <u>야 한다.</u> <u>1. 연구자등이 개발한 공공기술</u> <u>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의</u> <u>선정 및 지원에 관한 공개된</u> <u>기준과 절차</u> <u>2. 공공기술의 개발·권리화 및</u> <u>사업화에 대한 연구자등, 공</u> <u>공연구기관 및 제11조에 따른</u>

<신 설>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실질적 기여도 평가기준

3. 연구자 창업기업에 대한 기
술이전, 전용실시권·통상실
시권의 설정·허락 및 기술료
산정에 관한 기준

4. 연구자 창업기업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사유의 통지
및 재검토 절차

5. 연구자등의 창업과 관련한
이해충돌의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자등의 창업과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공공연구기관 및 제11
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성과를 평가할 때
특허출원 건수나 기술료 수입
뿐만 아니라 연구자 창업, 제품
·서비스의 출시, 매출, 고용,
민간 후속투자 및 해외시장 진
출 등 실제 사업화 성과를 반
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분야별 특성과 사업화에 필요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① ~ ④ (생략)

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겸임·겸직, 창업기업의 주식 취득·처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출자, 시설·장비·정보의 사용 등 제5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기준에 따라 연구자등의-----제정·운영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⑥ -----

-----사용, 공공기술의 이전·이용, 실질적 기여도 평가, 실시권 및 기술료의 조건, 신청의 처리기한과 재검토 절차 등 제5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⑦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 승계·관리 또는 통상적인 출원·등록·유지 등 행정지원을 이유로 연구자등의 창업을 제한하거나,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의

<신 설>

설정·허락을 부당하게 지연·거절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5(연구자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실시권 설정 등의 특례) ① 공공연구기관은 제24조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이 해당 공공기술에 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신청한 경우 그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이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창업자 중 1명 이상이 해당 공공기술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자등일 것. 해당 공공기술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

을 한 연구자등을 포함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공공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공공기술에 관한 공동 발명자 또는 그 밖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협약에 따라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가 현저히 곤란

한 경우. 다만, 공공연구기관
은 결정을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보
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전용실시권의 설정이 공공기
술의 보호 또는 공익을 현저
히 해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공공연구기관은 둘 이상의
창업기업이 제1항에 따른 신청
을 한 경우 공공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자등의 기여도, 사업
계획, 사업화 역량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
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이
나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협
약에 위반되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창업기업에 통상실시권을 우선
적으로 허락하여야 한다.

⑥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전용 실시권 설정계약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공공기술을 사업화하지 아니하면 전용 실시권의 범위·기간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창업기업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의견을 들은 후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공공연구기관은 실시권의 범위·기간, 기술료 및 그 밖의

계약조건을 정할 때 해당 공공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기여와 공공연구기관이 부담한 연구비·시설·장비·인력, 권리의 출원·등록·유지비용 및 전문적인 사업화 지원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이 수행한 통상적인 권리관리 또는 행정지원은 실제로 부담한 비용과 제공한 전문적 지원의 범위에서만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창업기업에 과도한 기술료나 그 밖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실시권을 설정·허락하는 경우 창업 초기의 현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술료를 감면·유예·분할납부 또는 사업화 성과에 연동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24조제5항에 따른 주식·채권·주식매수선

택권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술의 특성, 창업기업의 재무상태와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⑩ 공공연구기관은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허락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창업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연구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⑫ 공공연구기관은 제11항에 따른 재검토를 위하여 외부의 기술·법률·사업화 전문가와 연구자 대표가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재검토위원의 과반수는 공공연구기관 및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

· 사업화 전담조직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최
초 결정에 관여한 사람은 재검
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⑬ 공공연구기관은 제1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따
른 우선협상권, 전용실시권 또
는 통상실시권의 설정·허락,
기술료, 재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